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15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20일, 남궁역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- 다. 상정일자: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12월 1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남궁역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가로수 조성 · 관리 과정에서 수목을 반입 · 반출하고 있는데, 환경 여건에 따라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.
- 도로변 공사, 도로표지판 등 도로관리청과 조성 · 관리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밖에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

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 신설).

2) 「도로법」 및 도로 시설과 관련하여 조성·관리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반입·반출과 관련하여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청이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되었으며, 서울시는 “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” 사업 등 연례 반복 사업을 통해 시(市) 관리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해 오고 있음.
- 동 조례 제10조(가로수 심의위원회)에서는 가로수 관리청¹⁾이 ‘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’, ‘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’ 등에 관하여 도시숲 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)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관리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반입·반출 수목의 종류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나, 사업 환경 여건에 따라 심의 결과와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바,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안 제18조제1항은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(정비)를 할 경우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할 것과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가로수 조성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고, 안 제18조제2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 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도록 명시한 것임.

1) 가로수 관리청(제3조제2호 관련)

구 분	관리청
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 · 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재난안전실장
2. 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의 가로수 설치 · 관리	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
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

전자는 상위법인 「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5항²⁾을 반영한 것이고, 후자는 안 제2조(정의)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2)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가로수의 조성 · 관리)

⑤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 · 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생 략

7. 수정안요지 :

- 안 제18조제2항에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청을 명시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1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7일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함.

2. 주요 골자

-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는 주체로 관리청을 명시함(안 제18조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8조제2항 중 “가로수는”을 “관리청은”으로, “없도록”을 “없도록 가로수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<u>도로표지판 등 설치) <신 설></u>	<p>제18조(<u>조성·관리 협의 등)</u> ① 법 제12조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 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가로수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	<p>제18조(<u>조성·관리 협의 등)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관리청은 ----- ----- ----- ----- 없도록 가로수를 ----- --.</p> <p>③ · 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신 설>		
① · ② (생략)		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·관리하는”을 “조성·관리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리청이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제2항 단서 중 “제18조”를 “제20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6호 본문 중 “방제시에는”을 “방제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제18조”를 “제20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보호 할”을 “보호할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도로표지판 등 설치)”를 “(조성·관리 협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2조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3조”를 “제14조”로, “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”를 “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	<u>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
제12조(가지치기) ① (생 략)	제12조(가지치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<u>제18조</u>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제20조</u>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병해충의 방제)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	제13조(병해충의 방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1. ~ 5. (생 략)	6. ----- <u>방제는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제20조</u> -----.
6.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<u>방제</u> 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<u>제18조</u>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	
제14조(외과수술 등) ① 병해충, 분진, 매연, 화학약품,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	제14조(외과수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외과수술, 영양공급, 토양개량, 통기구,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8조(도로표지판 등 설치) <신설>

<신 설>

① · ② (생략)

제20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)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「건설산업기본법

-----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-----

----- 보호할 -----
-----.

제18조(조성·관리 협의 등) ① 법 제12조에 따라 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여야 하며,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②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·관리하여야 한다.
③ · ④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

제20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) ① -----

<p>시행령」 제7조 관련 <u>별표 1</u>에 따른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「산림조합법」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3조</u>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 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 9제1항 관련 <u>별표 1</u>의 6의 수목 진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	----- <u>별표 1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p>② <u>제1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산림조합법」 제108조</u>----- ----- --.</p>
--	---